

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

제9조(월 이용료 및 서비스의 내용과 그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①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시설급여 20%를 적용한 이용 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여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.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		1등급	2등급	3,4,5등급
요양급여	노인요양시설	69,150	64,170	59,170
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60,590	56,220	51,820
비급여	상급침실 이용료			
	식재료비(1식)	6,000(2,000)		
	간식비(1회)	900		
	이/미용료등			

구 분		금액(원/%)	내 역
장기요양	공단지원금	시설-총액의 80%	시설급여-서비스 이용자의 등급, 이용시간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%중 80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.
	개인부담금	시설-총액의 20%	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, 경감대상자는 50%가 경감될 수 있음
비급여항목	식사재료비	1일/ 6,000 원	1식 2,000원으로 하루 1식
	간식	1일/ 900 원	1회 900원으로 하루 1회
	경관영양 유동식비	1일/실비금액	경관영양식 회당 실비금액

② 서비스의 내용(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)

*다음의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.

가. 서비스 종류 및 내용 :입소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

- 신체활동지원서비스: 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, 식사도움, 체위변경 등
- 일상생활지원서비스: 취사, 청소 및 주변활동, 세탁, 목욕서비스, 급식제공서비스 등
- 개인활동지원서비스: 외출 시 동행, 은행업무 대행
- 정서활동지원서비스: 말벗, 생활상담, 의사소통지원, 여가 프로그램 지원,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등.
- 건강지원서비스 : 기초활력징후를 측정하여 질병예방 등 건강한 삶을 유지.
협력의료기관의 외래진료동행, 입원치료 보조 등.